

제19장
협정의 운영

제19.1조
공동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관련 부처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,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스라엘의 경제산업부장관 또는 그들 각자의 승계인이나 그들이 각자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.

2. 공동위원회는

가.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.

나.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.

다. 금융서비스와 같이 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로 협정을 더욱 확장하는 가능성과 함께 이 협정의 검토를 포함하여, 양 당사국 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.

라. 제 20 장(분쟁해결) 및 제 9 장(투자)과 제 15 장(무역과 환경)의 분쟁해결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,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.

마. 패널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을 결정한다. 그리고

바.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.

3. 공동위원회는

가. 임시 및 상설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.

나. 비정부 인 또는 단체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.

다. 이 협정의 개정을 채택할 것을 양 당사국에 권고할 수 있다. 그러한 개정은 제 22.2 조(개정)제 2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.

라. 제 20 장(분쟁해결) 및 제 9 장(투자)과 제 15 장(무역과 환경)의 분쟁해결 규정에 따라 설치된 패널 또는 재판소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, 이 협정의 규정에 관한 해석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.

마. 자신의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.

바. 공동위원회 결정으로 다음을 수정할 수 있다.

1) 관세 인하를 가속화하거나 관세를 철폐할 목적으로, 부속서 2-나(관세 인하 또는 철폐)의 양허표

2) 부속서 3-가(품목별 원산지 규정)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, 부속서 3-다(원산지 증명서)에 포함된 원산지 증명서, 부속서 3-라(원산지 신고서)에 포함된 원산지 신고서, 부속서 3-나(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)에서 제 10.10 조의 면제, 또는

3) 부속서 20-나에 규정된 절차 규칙 및 부속서 20-가에 규정된 행동 규범

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한 내에 자국의 적용 가능한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통보가 있는 경우, 이후에 언급된 모든 수정을 이행한다. 그리고

사.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대로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4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공동위원회는

가. 각 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.
그리고

나. 다른 쪽 당사국이나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, 또는 이용 가능한 그 밖의 모든 기술적 수단에 의하여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으로부터 30 일 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.

5.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제3항가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.

6. 투명성 및 개방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광범위한 시각을 수렴하기 위하여, 적절한 경우, 관련 대중 구성원의 견해를 고려하는 각국의 관행을 확인한다.

7.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상호 동의로 정한다.

제19.2조

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

1. 공동위원회의 산하에 다음의 위원회와 기구가 설치된다.

가. 상품무역위원회

나. 서비스무역위원회

다. 기업인의 일시 입국 작업반

라. 투자위원회

마. 관세위원회

바. 역외가공지역 위원회

사.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

아.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

자. 지식재산권위원회

차. 환경과 무역 위원회, 그리고

카. 협력위원회

2.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.

3. 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9.3조

자유무역협정 조정자

1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60일 내에 자유무역협정 조정자를 임명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조정자의 세부정보를 통보한다.

2. 조정자는 공동으로

- 가. 의제를 발굴한다.
 - 나. 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한 그 밖의 준비를 한다.
 - 다.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한다.
 - 라.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,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접촉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.
 - 마.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, 이 협정에 따라 제출되는 통보와 정보를 접수한다. 그리고
 - 바.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그들에게 회부된 그 밖의 모든 사안에 있어서 공동위원회를 지원한다.
3. 이 협정의 조정자는 이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필요시 회합할 수 있다.